한·아랍재단법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00 발의연월일: 2021. 6. 25.

발 의 자: 한병도·고민정·김석기

김승원 · 김영주 · 김영호

박 진 • 윤건영 • 이상민

이용선 · 이재정 · 조태용

지성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우리 정부는 2008년 아랍연맹 회원국(이하 "아랍국가") 정부와 함께 재단법인 한국-아랍소사이어티를 설립한 바 있음. 동 재단은 한국과 아랍간의 관계를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랍국가와의 상호인식과 친밀도를 높이는 대중동외교의 자산 역할을 수행해 왔음.

동 재단은 우리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, 아랍국가 정부와 한·아랍 양측의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민관합동 재단이라는 독보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동안 설립근거가 법 률에 명시되지 않아 그 역할과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었음.

국회에서는 2020년 한국-아랍소사이어티 보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, 최근 탈 석유 시대에 진입하는 등 변화하는 중동정세와 우리의 대중동관계를 감안한다면 동 재단의 업무범위 확대가 긴요함.

이에 '한·아랍재단'을 설립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-아 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 재단이 실질적인 아랍과의 우호 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며,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한·아랍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아랍국가와의 우호 협력과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호 친 선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한·아랍재단은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한·아랍재단은 아랍국가·아랍권 국제기구와의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증진 사업, 아랍국가에 대한 국내 이해 및 아랍국가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목적의 행사 등을 수행하며,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라. 한·아랍재단에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사무국을 둠(안 제9조).
- 마. 이사장 1명,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20명 이상, 감사 1명,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사무총장이 한·아랍재단을 대표하며,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(안 제10조).

- 바. 한·아랍재단은 정부의 출연금, 개인·법인·국제기구·아랍국가 정부 (이하 "정부외의 자")의 출연금 및 기부금,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운용수익,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(안 제17조제1항).
- 사. 정부는 한·아랍재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(안 제17조제2항).
- 아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출연자의 동의 없이 국고에 귀속할 수 없으며,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(안 제17조제3항).
- 자. 외교부장관은 한·아랍재단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·아랍재단의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(안 제21조).
- 차. 한·아랍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함(안 제22조 및 제26조).
- 카. 이 법에 따른 한·아랍재단이 아닌 자는 한·아랍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23조 및 제27조).
- 타.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산 하고 그 재산과 권리·의무 등은 신설되는 한·아랍재단이 승계함 (안 부칙 제3조).

한·아랍재단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·아랍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아랍국가와 의 협력과 교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호 친선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아랍국가"란 아랍연맹(The League of Ara b States) 회원국을 말한다.
 -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제3조(법인격) 한·아랍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
- 제4조(설립) 한·아랍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제5조(등기 사항) ① 제4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
 - 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 - 5. 공고의 방법

-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6조(사무소의 설치 등) ① 한·아랍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 - ② 한·아랍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7조(정관) ① 한·아랍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
 - 4. 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- 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- 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8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- 9. 공고에 관한 사항
 - 10. 내부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② 한·아랍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8조(사업) ① 한·아랍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대한민국과 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행사의 주관, 지원 및 참가
- 2. 문화, 전통, 과학·기술, 연구, 인적개발, 학술 등의 분야에서 아랍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내의 이해 및 아랍국가 내에서의 대한민국 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사 의 계획, 신설, 지원 및 참가
- 3. 대한민국과 아랍국가 간 교류 및 아랍국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
- 4. 걸프협력회의(GCC), 이슬람협력기구(OIC), 아랍연맹 등 아랍국가 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한 국제 친선 관계 증진
- 5.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한·아랍재단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조직) ① 한·아랍재단에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고, 집행기 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.
 - ②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

소집한다.

- ⑤ 감사와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⑥ 사무국은 이사회의 위임 및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· 아랍재단의 업무를 집행한다.
- 제10조(임원의 직무와 선출) ① 한·아랍재단에 이사장,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. 사무총장 각 1명을 둔다.
 - ②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이사회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-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④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 중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서 선출한다.
 -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,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- ⑥ 당연직 이사의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⑦ 감사는 한·아랍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 - ⑧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되,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- ⑨ 사무총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한·아랍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
- ① 사무총장은 외교부장관이 추천하고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①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이사장, 부이사장, 감사와 사무총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·아랍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미성년자
- 제13조(직원의 임면) 한·아랍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면(任免)한다.
- 제14조(임직원의 겸직 제한) ① 한·아랍재단의 사무총장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- ② 사무총장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- 제15조(대표권의 제한 및 대리인의 선임) ① 한·아랍재단의 이익과 사무총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한·아랍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 - ② 사무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한·아랍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

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- 제16조(공무원의 파견) 한·아랍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한·아랍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.
- 제17조(재원) ① 한·아랍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운영한다.
 - 1. 정부의 출연금
 - 2. 개인, 법인, 국제기구 또는 아랍국가 정부(이하 "정부외의 자"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부금
 - 3. 제2호의 운용 수익금
 - 4. 그 밖의 수입금
 - ② 정부는 한·아랍재단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 -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(정부외의 자가 이 법시행 전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소사이어티 기금에 출연한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그 출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국고에 귀속하거나 한·아랍재단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한·아랍재단은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
다.

- 제18조(사업연도) 한·아랍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9조(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) 한·아랍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20조(결산서의 제출) 한·아랍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
- 제21조(한·아랍재단의 지도·감독 등) ① 외교부장관은 한·아랍재단을 지도·감독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한·아랍재단에 대하여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·아랍재 단의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 - ⑤ 외교부장관의 지도·감독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비밀 유지의 의무) 한·아랍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

-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3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한·아랍재단이 아닌 자는 한·아랍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24조(「민법」의 준용) 한·아랍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한·아랍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6조(벌칙)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7조(과태료)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한·아랍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설립준비)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·아랍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

리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② 설립위원은 한·아랍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·아 랍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무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 며,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④ 한·아랍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 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(이하 "소사이어티"라 한다)가 부담한다.
- 제3조(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소사이어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모든 재산과 권리·의 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·아랍재단이 승계하도록 외교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소사이어티는 이 법에 따른 한·아랍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소사이어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한·아랍재단이 승계한다.
 - ③ 이 법 시행 전에 소사이어티가 행한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·아랍재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, 소사이어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·아랍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 - ④ 이 법 시행 전에 소사이어티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

- 로 한 것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한·아랍재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.
- ⑤ 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, 한·아랍재단 설립 당시소사이어티의 이사장·부이사장·이사·감사와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각각 한·아랍재단의 이사장·부이사장·이사·감사와 사무총장으로 보며, 잔여 임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⑥ 제2항에 따라 한·아랍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한·아랍재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⑦ 한·아랍재단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한·아랍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